

# 2013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0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정부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(借換) 계획과 관련 교부세삭감분 세입보전(2009년) 차환 예산반영을 위하여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,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1,80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,18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 
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,180백만원이 증액된 287,680백만원,  
특별회계는 54,12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.

### 나. 세입예산은

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채및예치금회수수입 6,18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없음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재무활동비 6,180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없음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3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45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